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469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9월 8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불용품 양여 내역 공개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인·단체에 한정하여 공개함.

2. 주요내용

- 불용품을 양여받는 자에 대한 공개 사항 중 개인의 성명, 주소를 제외하여 수정함(안 제72조의2제2항제1호).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양여받는 법인(단체)명, 대표자의 성명, 등기(등록)소재지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	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u><신 설></u>	제72조의2(불용품의 양여) 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 1. 양여받는 <u>자의 명칭·성명(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</u> 2.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, 가액 및 용도 3.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. 양여하는 사유 5.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제72조의2(불용품의 양여) ① ----- ----- --. ② ----- ----- ----- -. 1. ----- <u>법인(단체)명, 대표자의 성명, 등기(등록)소재지</u> 2. ----- ----- 3. ----- 4. ----- 5. ----- -----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의2(불용품의 양여) 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양여받는 법인(단체)명, 대표자의 성명, 등기(등록)소재지
2.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, 가액 및 용도
3.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
4. 양여하는 사유
5.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양여에 관한 적용례)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양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2조의2(불용품의 양여) 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 1. 양여받는 법인(단체)명, 대표자의 성명, 등기(등록)소재지 2.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, 가액 및 용도 3.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. 양여하는 사유 5.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